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52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20. 11. 19.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57,010,2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1. 처분의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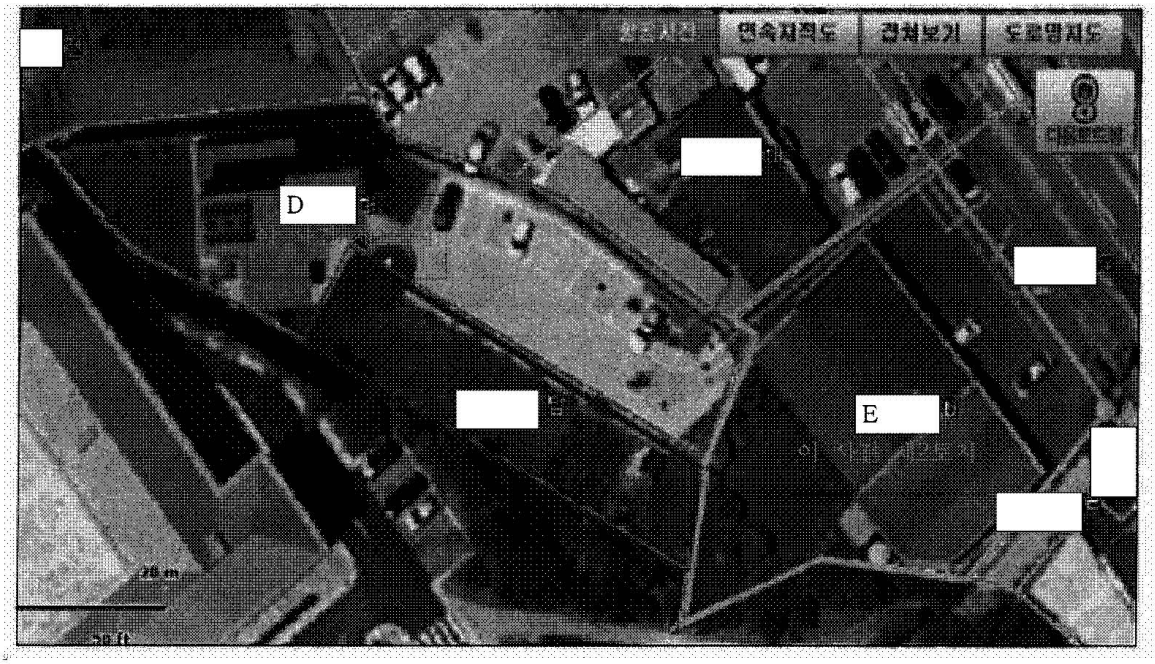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redacted]시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대 98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E 대 994㎡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 2토지 면적 합계 1,983㎡) 및 그 지상 건물 3동(F ~ G동, 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각 동을 가리켜 '이 사건 건물 F ~ G동'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는데, 2017. 4. 21. 이 사건 제1토지 중 2분의 1 지분과 이 사건 건물 G동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각 건물 소재 대지는 각 동별 대지에 관한 별도 구분 없이 이 사건 제1, 2토지로 되어 있고, 현황상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F, H동이,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G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대지면적은 1,983㎡, 이 사건 건물의 총 연면적은 455.3㎡, 건축면적은 373.3㎡이다. 각 동별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명칭	층수	용도	연면적(㎡)	건축면적(㎡)
F동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87.2.	187.2
H동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6.3	46.3
G동	2층	단독주택	221.8	139.8
		합계	455.3	373.3

한편,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배치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다.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450,351,498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762,300원과 지방교육세 1,351,050원, 농어촌특별세 900,700원 합계 18,014,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경 [redacted]도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각 동별로 대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1,398㎡)[1]의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전제하여,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면적 요건(1구의 건축물 대지면적 662㎡ 초과)을 갖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606,150원,

1)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1,404㎡라고 전제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농어촌특별세 4,460,840원, 합계 56,066,990원(가산세 포함)의 취득세 등 세액을 부과할 것을 2019. 11. 27. 과세예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 14.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이후 피고는 2020. 4. 10.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액 57,010,2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 내지 17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배우자 B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 F, H동에서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I'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다(B은 1999년경부터 2009년경까지는 'J'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이하 위 사업장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서측 부분(원고가 제시한 별지 도면 Ⓐ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주택이 있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동측 부분(원고가 제시한 별지 도면 Ⓑ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한 주차장 내지 차량 부품들의 적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2) 대로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 옆에 위치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사실상의 소로(갑 제12호증의4 참조)로 진입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을 거쳐 진입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표제부에는 각 동별 대지가 구분 · 표시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주택의 2017년 건물 시가표준액은 140,621,200원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다.[2)]

가격기준년도	소재지 및 지번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원)
		전체	산정	전체	산정	
2019년	E	1983	876.88	221.8	221.8	926,000,000
2018년	E	1983	876.88	221.8	221.8	908,000,000
2017년	E	1983	965.92	221.8	221.8	929,000,000
2016년	E	1983	965.92	221.8	221.8	884,000,000
2015년	E	1983	965.92	221.8	221.8	863,000,000

나.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 대상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은 이 사건 지분, 즉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의 2분의 1 지분이고, 그 가액은 450,351,498원인데, 이는 고급주택 가액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시가표준액 6억 원에 미달하는 액수이므로, 이 사건 지분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① 주장).

2) 이 사건 제1, 2토지의 배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데, 이 사건 제1토지 중 Ⓐ

2) 이 사건 주택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이 사건 건물 각 동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1, 2토지의 대지면적을 안분하였는데, 2018년에 착오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지면적이 과소입력됨에 따라 2018년 및 2019년 개별주택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작은 금액으로 산정 · 고시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부분(면적 479.4㎡)만 이 사건 주택의 대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은 오로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서만 사용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주택 1구의 대지면적은 위 479.4㎡로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662㎡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의 ② 주장).

3) 원고가 2017. 4. 21.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 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삼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원고의 ③ 주장).

4) 관련 지방세법 규정 해석상 이 사건 주택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얼마든지 견해가 대립할 수 있는 점, 원고는 당초 취득세 신고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그가 한 취득세 신고 업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④ 주장).

다.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①,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공유하는 경우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취득한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은 유상취득의 경우에 취득가액 6억 원 또는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참조), 이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라면,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함이 타당하겠으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와 이 사건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점, ② 공유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공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법리는 유상취득뿐만 아니라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④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취득세액에 있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에 적용할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세율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 대상 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되(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라 함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참조),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주거용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토지를 의미하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대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원 1993. 7. 27. 선고 91누10985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건물 시가표준액은 140,621,200원으로 9,000만 원을 초과하고 개별주택가격은 6억 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정한 가액 요건을 충족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위 조항 소정의 662㎡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다)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은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대지면적 요건인 662㎡를 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①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각 그 대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 Ⓑ 부분 각 사이에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제2토지(이 사건 사업장 옆으로 있는 사실상의 도로 형태)와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입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가족의 차량 2대를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위 주차장이 오로지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하여서만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에 접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대지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만 해당되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은 이 사건 사업장, 즉 이 사건 건물 F, H동의 부속토지에만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도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물 대지 내에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비록 건축물대장상 각 건축물의 대지로 각 지번 토지가 함께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대지는 현황상 구분된 부분만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각각의 대지면적은 토지 지번과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을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는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한다는 사유를 과세전적부심사 당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였는바,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위법은 없다).

(3) 이 사건 건물 F, H동 연면적의 합계는 233.5㎡(F동 187.2㎡ + H동 46.3㎡)이고, 이 사건 건물 G동의 연면적은 221.8㎡인데, ① 이 사건 제1, 2토지의 대지면적 합계 1,983㎡을 위 각 연면적 비율대로 안분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의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966㎡[1,983㎡ × {221.8㎡/(233.5㎡ + 221.8㎡)}]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되고, ②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건물 F, H동의 부속토지로 구분한 다음,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만을 위 각 연면적 비율대로 안분할 경우에도,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723.6㎡[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 479.4㎡ +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 501.4㎡[3] × {221.8㎡/(233.5㎡ + 221.8㎡)}]이 된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662㎡를 넉넉히 초과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7. 4. 21.인데, 피고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로서, 위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삼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의 ④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3)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의 면적은 479.4㎡, Ⓑ 부분의 면적은 501.4㎡로 그 합계 면적은 980.8㎡인데, 이는 이 사건 제1토지 면적 989㎡에 8.2㎡ 미달하나,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 구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상정하여 판단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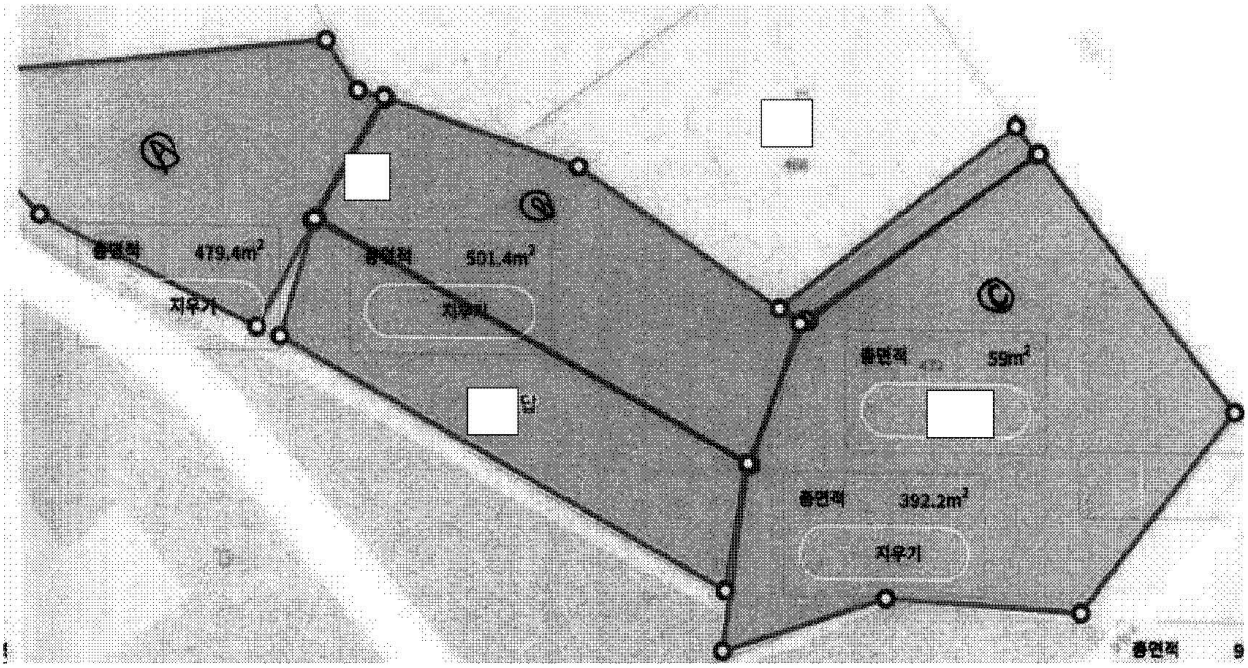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별지

도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16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끝.